

01 법률칼럼

- Superman의 등장을 기다리며
- 신규자금 조달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에 대하여 (홍성준 변호사)

04 열려라 중국

- 임대계약에 관한 사법해석 발표 (부응 중국변호사)

07 생생러시아

- 중앙아시아지역 각국의 담보제도- 카자흐스탄 편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10 기획특집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의 도입 (채희석 변호사)

12 주목! 이 판례

-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무효확인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15 최신법령

-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변경 등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신설 등
-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대상 신설 등

17 업무동향

- “정통방법 개정에 따른 의료정보보호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 지평지성, 국내 최초의 탄소펀드 법률자문 대리
- 지평지성, 예한울저축은행 지분인수 업무 진행
- 지평지성, 삼성선물의 FX마진거래 시장 관련 법률 자문 대리
- 지평지성,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상담 및 강의 진행

23 지평지성 단신

- 김성수 변호사, 2009년 KOEC 하계 워크샵 지정 토론 참석
- 김범희 변호사, 로앤비에서 ‘저작권과 개인정보 분쟁 사례’ 강의

24 영입인사

- 강영주 고문
- 성양기 영국변호사
- 조준금 중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률칼럼)

Superman의 등장을 기다리며

- 신규자금 조달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에 대하여 -



홍성준 변호사

1.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의 신규자금 조달의 필요성

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파산부 판사와 변호사로서 도산업무를 취급하면서 기업과 개인이 과도한 채무의 압박에 시달리면서 부실화되어 가는 과정과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 조정의 과정, 그리고 M&A를 통하여 다시 갱생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회생절차로 진입한 채무자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M&A를 추진하는 우리의 회생 실무 관행은 매우 독특한 현상입니다. 회생계획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인의 희생이라는 기반 위에서 어렵사리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업이 위축되고 나아가 채무자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채무자가 자신의 잠재적인 사업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규자금의 원활한 조달방법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를 고대하여 왔고, 드디어 지난 9월 29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그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2. 미국의 DIP Financing 실태

도산법과 도산실무가 매우 발달한 미국은 우리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Priority Claim을 10단계로 우선순위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규자금 차입으로 인한 채권은 최우선의 순위를 가지고 있어 이를 보통 superpriority claim이라고 합니다. 미국 도산법

이 1978년 개정으로 이와 같은 규정을 갖추게 되었지만, 초기에는 별로 활용이 되지 않았고 있다가 1980년대 체이스맨해튼 은행이 superpriority 규정을 활용한 대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주 이용되어 지금은 이런 신규자금 차입 거래를 DIP Financing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 미국 내 DIP Financing 실적은 미화 10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까지도 이른바 mega case를 중심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Lehman Brothers 사태 이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Chrysler나 GM 사건에서도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Chapter 11 신청 직후 해당 회사에 자금을 제공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일종의 DIP Financ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차입한 자금으로 인한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신규자금 차입 채권을 비롯한 모든 공익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개정 전 법률 제179조 제5호, 제12호, 제180조 제1항, 제2항, 제7항). 그러나 이와 같은 공익채권 중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 차입으로 인한 채권(제179조 제1항 제5호)과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행한 자금 차입으로 인한 채권(제179조 제1항 제12호)은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개정 법률 제180조 제7항)으로 개정하여 이른바 신규 차입금 채권에 대하여 Super Priority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 법률은 이처럼 신규자금 차입금 채권이 Super Priority를 갖게 되므로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회생법원이 신규자금 차입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제179조 제2항)고 규정하여 무분별한 신규자금 차입으로 채무자나 그 사업이 또 다시 부실화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앞으로의 과제 - 신규자금 조달의 용이성 제고를 위한 제언

1978년 파산법 개정 직후 미국의 사례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우리 회생절차에서 신규차입자금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가 용이하게 신규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과문이지만 필자가 알고 있는 바로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만 해도 채무자의 기존 금융기관 차입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금융기관은 그 채무자의 신용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개정 법률을 활용하여 신규자금을 차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생각해보면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한다는 것은 곧 지급 불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채무자의 채무 상환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금융기관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모든 채권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으로 그 권리행사가 중지되고 회생계획에 따라 그 채무가 조정되어 채무자가 장래의 사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 내로 감축되어 있고, 이번 개정 법률로 회생절차 내에서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의 사업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전개되어 채무 변제 재원의 확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는 M&A가 진행되어 다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신규조달 자금 채권은 공익채권이어서 그때에도 권리 감면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다가 현재의 동산 담보 제도와 채권 담보제도가 개선되면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제공 받아 활용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나아가 신규자금으로 조달한 자금의 집행은 회생법원의 공정하고도 투명한 감독하에 이루어지므로 또 다른 감시장치가 보장됩니다.

이런 상황을 두루 생각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신규자금 대출로 공익채권 중 최우선적 지위에 획득하게 되는 채권금융기관은 그 신규자금 대출금이 낭비되거나 상환되지 아닐 확률이 매우 낮은, 결과적으로 채권금융기관에게는 상환불능의 위험이 매우 낮은 대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이 채무자의 이익에만 치우친 짧은 소견일까요?

모처럼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규자금 대출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신속히 제거되고 개정 법률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이 촉진되고, 나아가 채권자와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려 깊은 발상의 전환으로 회생절차에서 슈퍼맨으로 자리 잡게 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 슈퍼맨이 눈부신 활약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변호사인 필자의 수고도 덜어주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JS Horizon

(열려라 중국)

임대계약에 관한 사법해석 발표



부응 중국변호사

중국 경제의 가파른 성장과 주택 제도 개혁에 더불어 부동산 임대산업이 빠르게 발전한 가운데 많은 문제점도 수반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소송 절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계약 분쟁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의 도시 부동산 임대계약 분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 해석'(이하 '사법해석')을 2009년 7월 30일에 발표하였으며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법해석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 임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대계약 효력의 인정 원칙 확정

계약의 효력에 대한 인정은 부동산 시장의 발전 및 거래 질서의 유지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법해석은 무효 계약의 범위를 불법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1) 건설공사계획허가증을 받지 못하거나 건설공사계획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하지 않은 건축물; (2) 비준을 받지 못하거나 비준 내용에 따르지 않고 건설한 임시 건축물; (3) 비준 사용 기한을 초과한 임시 건축물 등을 포함합니다.

2. 내부 인테리어에 관한 처리 규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부동산 임대계약 사건 중에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처리는 재판 중의 줄곧 논쟁거리가 되어왔으나 이 사법해석은 이런 문제에 대한 처리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침해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상황별로 달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임대계약이 무효인 경우

부동산의 부차물로 되지 않은 내부 인테리어에 대하여서는 임대인이 사용에 동의하면 환가하여 임대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인이 원상복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동산의 부차물로 된 내부 인테리어에 대하여서는 임대인이 사용에 동의하면 환가하여 임대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쌍방이 각자 과실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임대계약 기간 만료 및 해지 경우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때 당사자가 내부 인테리어에 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부차물로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귀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부차물로 된 내부 인테리어에 대하여서는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이 해지될 경우는 부동산의 부차물로 된 경우 아래와 같이 4가지 상황으로 나뉘어 달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1) 임대인의 위약 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남은 임대 기간 내의 내부인테리어의 가치에 대한 손실을 청구할 수 있다.
- (2) 임차인의 위약 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남은 임대 기간 내 내부 인테리어 가치에 대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임대인이 사용에 동의하면 이용가치가 있는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적당히 보상하여야 한다.
- (3) 쌍방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남은 임대 기간 내 내부 인테리어 가치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쌍방이 각자 과실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4) 쌍방과 무관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남은 임대 기간 내 내부 인테리어 가치의 손실에 대하여서는 쌍방이 공평 원칙에 따라 부담한다.

3. 임차인의 우선구매권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우선구매권도 임대계약 사건을 재판함에서 아주 복잡한 문제였는 바 사법해석은 아래와 같이 우선구매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우선구매권에 대한 보호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임대할 부동산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의 차압 조치를 취하여 이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임대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저당권자와 합의하여 부동산을 환가한 후 저당권자에게 팔거나 부동산을 판매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합리적인 기한 내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같은 조건하에서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경매기구에 위탁하여 부동산을 판매할 수 있으며 경매 5일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경매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임차인이 우선구매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우선구매권에 대한 제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우선구매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1) 부동산의 공유자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 (2) 임대인이 부동산을 친척에게 판매하는 경우(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조부모, 외 조부모, 손자녀, 외 손자녀 포함)
- (3) 임대인이 통지한 후 임차인이 15일 내에 구매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
- (4) 제3자가 선의로 부동산을 구매하고 이미 등기한 경우

사법해석은 위의 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법원의 관련 사건 재판에 있어서 보다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JS Horizon

(생생러시아)

중앙아시아지역 각국의 담보제도 - 카자흐스탄 편 -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나라를 꼽는다면 카자흐스탄이 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공화국 중 하나였다가 1991년에 독립한 나라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산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서방의 외국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현지로 진출하였고, 그간 괄목한 만한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간의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거래 제도, 회사법 제도 등이 많이 변화되었고, 특히 담보제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본 호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의 담보제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저당권

카자흐스탄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제도를 인정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의 대상은 영업, 건축물, 건물, 구조물, 다가구 아파트, 운송수단 등입니다. 토지 및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토지법 및 기타 천연자원 관계법령에서 정한 한도 및 조건하에서만 허용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저당권설정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고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날인합니다. 당사자 날인 후 저당권설정계약서는 국가등기를 하여야 하고, 저당권은 저당권설정계약을 국가등기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키르기스스탄과는 달리 카자흐스탄에서의 저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당권설정계약서 공증확인 은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저당권설정계약에는 몇 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의 성명(회사명) 및 거주지(소재지), 만약 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 정보
2. 주채무 요점, 주채무액 규모 및 이행기
3. 저당재산의 목록 및 소재지
4. 저당권설정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 형태(소유권 인지 운영권)
5.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해 반드시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저당권의 국가등록을 위해 거래 당사자는 다음의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합니다.

1. 국가등록 신청서
2. 저당물에 대한 권리관계서류(기술대장, 토지식별 문서 포함)
3. 신청인 신분증 사본
4. 국가등록 수수료납부 서류
5. 법인 설립서류, 사원총회의사록
6. 외국법인인 경우 공증확인한 상업등기부등본
7. 공증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은 거래 당사자 서명 진정성, 행위능력, 의사를 확인

저당권설정 국가등록은 등록기관에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 이루어집니다.

저당권 국가등록 기록은 다음의 경우 말소됩니다.

1. 저당권자의 신청서 또는 주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저당권설정자의 신청에 의해
2. 저당물 실행에 의해
3. 저당권설정계약 해지에 의한 저당권 소멸
4. 법률에서 정한 기타 원인에 의한 저당권 소멸

2. 예금질권

카자흐스탄의 관계법령에 따라 예금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대해서도 질권설정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때 예금은 질권자나 다른 사람에게도 인도될 수 있는데 질권대상인 예금을 질권자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은행금고, 보관함 등에 보관하여 이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들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예금질권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러한 예금질권계약도 국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질권도 국가기관에 등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금질권등록을 위해서는 질권설정자는 신청서와 예금질권설정계약서 등의 관련 문서를 함께 등록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등록기관은 문서수령증을 신청인에게 발부하고, 질권등기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질권등록증을 발부합니다.

예금질권은 효력기간은 질권의 소멸 시까지 유효하고, 채무를 이행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등록기관에 서면으로 채무 이행을 통지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권자가 이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 이행하는 경우에는 질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분질권

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카자흐스탄 관계법령상 허용됩니다. 유한회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원이 다른 사원에게 지분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사원명부를 기록작성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관 내부분서에 의거 지분질권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지분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예금질권과 유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질권등록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연대보증

카자흐스탄에서도 연대보증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연대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무효입니다. 카자흐스탄 관계법령에 따라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통보하고, 채권자는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서면형식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 모든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권자의 지위를 인도받고, 채무자에 대해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외에는 연대보증과 관련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JS Horizon

(기획특집)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의 도입



채희석 변호사

2009년 9월 29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 개정안을 예고함으로써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오던 SPAC의 도입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KRX가 SPAC의 상장 관련 특례를 반영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면 조만간 국내에서 제1호 SPAC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간 SPAC이 자본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온 것은 여러 측면에서 SPAC에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반투자자의 측면에서 SPAC은 원금 수준의 금액을 보장받으면서 소액의 금액으로도 인수합병 성공 시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환금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인수대상기업의 측면에서도 SPAC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상장기업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우발채무가 없는 SPC를 합병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우회상장에 비하여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더욱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SPAC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자(이른바 '스폰서')의 입장에서 SPAC은 투자, 인수, M&A 등 IB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포함한 금융상품으로 수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PAC의 주요 특징으로 (i) SPAC의 경영진이 대상기업을 발굴하고 주주가 기업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이중적 투자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과 (ii) SPAC의 설립 후 일정 기간 내에 대상회사를 인수하고, 기업공개를 통해 가치가 상승한 합병기업의 주식을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매각하여 투자이익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수익구조를 취한다는 점이 거론됩니다. 한편, 이번에 도입되는 한국형 SPAC은 미국식 SPAC과 달리 (i) 자기자본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1,000억 원 이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지분율이 5%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ii) 자금조달 방법이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로 제한되며(특히 SPAC의 상장 이후에는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도 금지됩니다), (iii) 기업결합방식이 합병으로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형 SPAC의 특징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의 기존 제도와의 조화나 SPAC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내에 정착시킬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SPAC 제도는 올 연말까지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PAC은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장절차를, 3년 이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내년 중반쯤에는 최초로 상장되는 SPAC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내 IPO 시장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교적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PEF처럼, 부디 SPAC 역시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자본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JS Horizon

(주목! 이 판례)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무효확인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1. 들어가며

이번 사건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및 그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격과 허용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2. 사안의 개요

재건축조합인 피고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작성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조합총회결의가 있자, 조합원인 원고들은 조합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원심은 이를 민사소송으로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된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하였습니다.

3. 사안의 쟁점과 배경

종래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의 전신인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이 구속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대법원은, 재개발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의 대상이고,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는 후에도 그러한 소송은 허용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관리처분계획도 위법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나아가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으로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투는 소송 외에 그 절차적 요건에 불관한 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허용할 필요

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4. 대법원의 판시 내용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정리하였습니다.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기 전이라면 위법한 총회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자료로 제출하거나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새로이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다시 총회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하자 있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고, 또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판결과 증거들을 소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아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종래 판결과는 다른 견해를 취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는 후에도 여전히 소로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694 판결과 이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 것입니다.

5. 나오며

위 판결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 소송입니다. 따라서 서울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방은 각 지방법원의 본원이 제1심 전속관할법원이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전속관할위반으로 절대적 상고이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과 같은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을 때까지만 허용되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는 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고 나서 제기되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데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었다면 더 이상 그러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 판결이 선고되고 일주일 후 대법원은 조합설립결의를 다투는 소송 역시 위와 동일한 논리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특히 이 판결에서 조합설립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던 종래 태도를 변경하여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판시하여 인가 자체를 처분으로 다룰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6. 다운로드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총회결의무효확인](#)

JS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최신법령)

1.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변경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시행)

1. 신용정보 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 신용정보업 허가 요건 중 주요출자자에 관한 규정인 시행령 제6조 제3항을 개정하여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주요출자자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의 여건이 구체화되어 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제공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시행령 제28조 제2항을 개정하여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32조를 개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다운로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시행)

2.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신설 등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479호, 2009. 9. 29. 시행)

1.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1호를 신설하여 자산유동화방식을 활용한 신탁회사가 일정한 요건하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및 부칙 제3조를 개정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취득 요건을 변경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479호, 2009. 9. 29. 시행)

3.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대상 신설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748호, 2009. 9. 29. 시행)

1.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7을 신설하여 자산유동화방식을 활용한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제1호의5 및 부칙 제3조를 개정하여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취득 요건을 변경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748호, 2009. 9. 29. 시행)

JS Horizon

(업무동향)

“정통망법 개정에 따른 의료정보보호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9월 29일,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신관 232호 모의법정실에서 열린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주최 및 대학병원 법무담당자 협의회 후원의 '정통망법 개정에 따른 의료정보보호세미나'에 참석하여 발제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제1주제로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소영 변호사와 김지연 변호사가 '정통망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에 대해 발제하였으며, 제2주제로 김형준 안철수연구소 컨설팅 팀장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체계 수립과 전략'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각 발제자 및 지평지성 이은우 변호사가 세미나 참석자들과 함께 질의응답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법무담당자 및 전산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올 7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정통망법의 개인정보보호의무가 적용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무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을 비롯해 시스템구축 및 운영방안을 실제적으로 검토코자 마련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파이낸셜뉴스 - 안철수연구-지평지성, 의료개인정보보호세미나 개최](#)
- [보안뉴스 - 의료기관, 기술적 관리적 개인 의료정보 보호 체계 필수](#)
- [아이뉴스24 - 안연구소-지평지성, 의료개인정보보호세미나 개최](#)
- [뉴스천지 - 안철수연구소-지평지성, 의료개인정보보호세미나 개최](#)

[담당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



이은우 변호사



김지연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행사사진]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통망법 개정에 따른 의료정보보호 세미나' (2009. 9. 29.)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통망법 개정에 따른 의료정보보호 세미나' (2009. 9. 29.)

JS Horizon

(업무동향)

지평지성, 국내 최초의 탄소펀드 법률자문 대리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법률자문사로 참여한 국내 최대의 탄소펀드 약정식이 2009. 9. 29. (화) 조선포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식 출범된 탄소펀드는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처음 설정되는 것으로 규모는 1000억~1500억원에 달하며, 국내 최초의 탄소배출권 거래 펀드입니다. 투자자로는 수출입은행을 비롯하여 상장기업과 공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13개 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펀드입니다.

이번 국내 최대의 탄소펀드는 일반 펀드와 달리 재무적 투자자(FI) 없이, 전략적 투자자(SI)로만 구성되었으며, 운용은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맡습니다.

[관련기사]

- [매일경제 - 수출입銀 탄소펀드 가동](#)
- [한국경제 - 1000억 규모 탄소배출권 구매펀드 첫 출범](#)
- [디지털타임즈 - 수출입은행 탄소펀드 출범](#)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권용숙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연주 변호사

JS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업무동향)

지평지성, 예한울저축은행 지분인수 업무 진행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예한울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현대스위스 자산운용의 PEF 설립 및 예한울저축은행 지분인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9월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예한울저축은행의 주식 취득을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대스위스IV저축은행'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매일경제 - 현대스위스저축銀, 예한울저축은행 인수 완료](#)
- [아시아투데이 -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예한울저축은행 인수승인](#)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JS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업무동향)

지평지성, 삼성선물의 FX마진거래 시장 관련 법률자문 대리

삼성선물은 지난 9월 2일, "국내 최초로 복수 FCM을 채택한 플랫폼을 갖춘 시스템으로 오는 21일 FX마진 실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평지성은 본 건과 관련하여 삼성선물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머니투데이 - 삼성선물, FX마진 사업 이달 개시](#)
- [이투데이 - 삼성선물, 복수 FCM 갖추고 FX마진시장 뛰어 들어](#)

[담당 변호사]



황승화 변호사



길영민 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JS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업무동향)

지평지성,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상담 및 강의 진행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들은 10월 8일,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사)사회적기업지원 네트워크(세스넷, <http://www.sesnet.or.kr/>)가 주관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상담 및 강의」에 참석하여 법률상담과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와 상담은 사회적기업의 임직원과 사회적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지적재산권, 개인파산 및 회생 등과 관련한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지평지성의 임성택, 김상준, 배성진, 최찬욱, 이소영, 김이태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009년 3월 10일 노동부 및 세스넷과 「사회적기업 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세스넷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배성진 변호사



최찬욱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김이태 변호사

JS Horizon

(지평지성 단신)

김성수 변호사, 2009년 KOEC 하계 워크샵 지정 토론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김성수 변호사가 지난 9월 19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3과학관에서 개최된 '2009년 KOEC 하계 워크샵'에 참석하여 지정토론을 하였습니다. 워크샵의 주제는 『심혈관 질환의 사업장 보건 관리』였고, 김성수 변호사는 “업무상 질병 인정에 관한 법령과 판례 현황”이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을 하였습니다.

KOEC(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Clinics)는 산업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산업장 및 환경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조사 연구하는 '대한 직업환경의학 외래협의회'라는 전문가 단체입니다. JS Horizon

김범희 변호사, 로앤비에서 '저작권과 개인정보 분쟁 사례'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범희 변호사)

지평지성의 김범희 변호사가 지난 9월 18일 로앤비가 주최한 기업법무교육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실무 I'이라는 제목으로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2008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과 이론을 정리하고 다양한 사례의 판결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판결들과 그 의미를 정리함으로써 유관기관이나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직무발명과 영업비밀의 보호, 브랜드 분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지적재산권 분쟁실무 II'를 강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JS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영입인사)



강영주 고문
casayjk@hanmail.net

□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학사)

□ 경력사항

- 제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재무부 사무관
- 재무부 재정금융심의관실 서기관
- 재무부 국제협력과장
- 주벨기에 대사관 재무관
- 재무부 증권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
- 재무부 총무과장
- 주불 대사관 재무관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파견
-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보험국장, 증권보험국장
- 국회재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장
- 한국은행 감사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 증권선물거래소 고문
- (주)한국공항 사외이사
- 우리투자증권(주) 사외이사
- (현) Fn Guide 경영고문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고문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강영주 고문입니다.

저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금융정보제공업체인 에프앤가이드 경영고문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평지성에서 중국기업을 비롯한 해외기업의 한국 IPO 업무 등 금융·증권, 국제금융 및 중국업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영입인사)



성양기 영국변호사

ygsung@js-horizon.com

□ 학력사항

- 중경고등학교 졸업
- 한국해양 대학교 기관학과 졸업

□ 경력사항


- SK 해운 근무 (1996-1998)
- 영국변호사 면허 취득(2003년)
- 런던, Holman Fenwick &Willan LLP 근무 (1998-2005)
- Cass Maritime Limited 근무 (2005-2009)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성양기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국해운회사와 런던소재 법무법인 Holman Fenwick &Willan에서 해운관련 소송업무를 하다가 지평지성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영입인사)



조준금 중국변호사
jjcao@js-horizon.com

□ 학력사항

- 화동이공대학 법대 법률전공 졸업
- 화동이공대학 법대 국제법 석사과정

□ 경력사항

- 중국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중국법률고문

□ 인사말


안녕하세요. 조준금 중국변호사입니다.

저는 2009년 10월부터 법무법인 지평지성 상해지사에 중국법률고문으로 합류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절강성 지방인민검찰원에 근무하면서 여러가지 법률 실무에 참여하였고,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다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국제법, 민법, 형법 및 지적재산권 등의 영역이 포함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평지성
JISUNG HORIZON

<http://www.js-horizon.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7, 11층 Tel : 02)6050-1600 Fax : 02)6050-1700

강북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30-7400 Fax : 02)6230-7599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